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81
----------	------

2021년 3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2월 5일 김화숙 의원 외 29명
2.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3. 상정일자 :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2월 2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김화숙 의원)

1. 제안이유

-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은 식품부터 생활용품 까지 그 영역을 점차 넓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 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음. 최근 경기 침체 등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현행 조례는 상위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여 그 내용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이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사항 및 보조금 지원, 교육·홍보, 평가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더불어 조례 개정을 통해 기부 식품 등 제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을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반영함.(안 제6조)
- 나.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신설)
- 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신설)
- 라.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 대상 교육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0조)
- 마. 보조금 지원 사항으로 기부식품 등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를 추가함.(안 제11조)
- 바. 식품등 기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동 조례 개정안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취약계층의 증가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상위법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수정 및 보완하고 사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안 제6조)

- 동 조례 개정안 제6조는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되고 있으며,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고 되어있음. 하지만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가 2017.1.31.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관련된 본 조항의 조문을 삭제하려는 사항임.

나. 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안 제7조)

- 개정안 제7조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1)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

1)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세부사항으로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종사자 교육,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손해보험료 지원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음.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u> <u>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u> <u>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u> <u>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u> <u>5. 손해보험료 지원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u> <u>6.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8조)

- 동 조례 개정안 제8조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따라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를 의미함.
- 「2020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에 따른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업무는 광역 단위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조정·배분 및 기초푸드뱅크·마켓의 전반적인 관리 수행으로 볼 수 있음.
 - 안 제8조의 개정사항인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세부 업무는 「2020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에 명시된 사항임.

■ 광역기부식품등 지원센터의 역할

- 광역 단위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조정·배분
-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식품위생교육, 자살예방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교육 등 실시

- 2) 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제1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사업자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관리 지원
-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홍보
- 사업계획 수립(운영위원회 포함) 및 실적보고(관할 시·도 및 전국지원센터)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 실태조사
- 광역 및 관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 통계 관리(전국지원센터 연계)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 점검

※출처: 「2020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p16), 보건복지부

- 안 제8조 5항 및 6항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광역푸드뱅크센터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3)에 근거하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광역푸드뱅크센터 위탁근거를 명확화 하는 것에 대해 쟁점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8조(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3조의2에 따라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역 단위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조정·배분 2.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식품위생교육, 자살예방교육, 기부물품관리 시스템(FMS)교육 등 실시 3.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관리 지원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
실태조사

5. 광역 및 관할 기부식품등 제
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
켓) 통계 관리

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점검

7.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
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광역기부식품
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갖
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④ 그밖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법
3조의2, 시행령 4조의2에 따른다.

⑤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운
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
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3)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
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라.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 교육·홍보(안 제10조)

- 개정안 제10조에서는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 대상 교육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열거하여, 식품위생교육 뿐만 아니라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자살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10조(교육·홍보) ① ----- ----- ----- 식품 위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자살예방교육 등----- -----.</p> <p>②·③ (현행과 같음)</p>

- 「2020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에 의하면 식품등 제공 종사자 대상 4종 필수 교육(식품위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자살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수료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러므로 필수교육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 필수교육

- 연간 1회 이상 식품위생교육 수료
- 연간 1회 이상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수료
- 연간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 수료
- 연간 1회 이상 자살예방교육 수료

○ 권장교육

- 직무능력 향상 교육 수료
- 정보화 교육 수료

※ 출처: 「2020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p27,p33) 자료 재구성, 보건복지부

마. 보조금 지원(안 제11조)

- 동 조례 개정안 제11조는 기부식품등 제공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사항으로 ‘기부식품 등을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를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4)에 따른 기부식품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험료의 일부 및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에 따른 사항임.

4) **제9조(이용자 보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바. 식품등 기부사업 실태조사(안 제12조)

- 동 조례 개정안 제12조는 식품등 기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 및 서울시광역시푸드뱅크센터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실태조사도 시행하고 있음.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식품등 기부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짐.

〈2020년 서울시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실태조사〉

- 사업기간 : '20. 7.27.~ 8.13.
- 대 상 : 25개 자치구 푸드뱅크·마켓 28개소(운영주체별)
- 주요내용
 - 시설 일반현황, 기부물품 제공내역 및 재고현황, 코로나19에 따른 운영사항
 - 수익사업에 대한 사항
- 수행인력 : 서울시 2인, 서울광역시푸드뱅크 2인

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안 제14조)

- 동 조례 개정안 제14조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먼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25)에 따라 매 3년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5) 제9조의2(사업장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시설·장비·인력 등의 안전관리 수준과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확보 수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수행결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서울형 평가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처럼 서울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 대한 평가는 이원화 되어있음.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는 2018년, 서울시 주관 평가는 2006년부터 기초푸드뱅크·마켓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음.
 - 평가내용으로는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인력현황,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등이 있으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임.
-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2의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공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서울형 평가도 평가결과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조(평가) ① 시장은 법9조의2에 따라 매 3년마다 시행하는 평가 주기에 맞춰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결과를 평가해야 한다.</u> <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u>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외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서울형 평가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재정적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아. 조례 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 : 원안동의

-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에서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이견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종합의견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식품부터 생활용품까지 그 영역이 점차 넓혀지고 있으며, 경기침체 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증가로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것에 대한 쟁점사항은 없음.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의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김화숙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81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5일
발 의 자 : 김화숙,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영희, 김 경,
김생환, 김소영, 김종무,
김혜련, 문병훈, 박기재,
송명화, 여 명, 오한아,
이광호, 이병도, 이상훈,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태성,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최 선,
최웅식, 한기영, 홍성룡
의원(30명)

1. 제안이유

-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은 식품부터 생활용품 까지 그 영역을 점차 넓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 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음. 최근 경기 침체 등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현행 조례는 상위법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여 그 내용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이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사항 및 보조금 지원, 교육·홍보, 평가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더불어 조례 개정을 통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을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반영함.(안 제 6조)
- 나.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신설)
- 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신설)
- 라.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 대상 교육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0조)
- 마. 보조금 지원 사항으로 기부식품 등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를 추가함.(안 제11조)
- 바. 식품등 기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 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제7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3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3조로 하며,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제11조로 하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5. 손해보험료 지원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3조의2에 따라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광역 단위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조정·배분
2.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식품위생교육, 자살 예방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교육 등 실시
3.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관리 지원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실태조사
5. 광역 및 관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 통계 관리
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점검
7.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법3조의2, 시행령 4조의2에 따른다.

⑤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실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으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부식품 등을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

제10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을 “식품위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개인 정보 보호교육, 자살예방교육 등 을”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평가) ① 시장은 법9조의2에 따라 매 3년마다 시행하는 평가 주기에 맞춰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이외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서울형 평가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재정적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p> <p>1. <u>이용자에게 무상제공(다만,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u></p> <p>2. ~ 4. (생략)</p> <p><u><신 설></u></p>	<p>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 ----- ----- -----.</p> <p>1. <u>이용자에게 무상제공</u></p> <p>2. ~ 4. (현행과 같음)</p> <p><u>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1. <u>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u></p> <p>2. <u>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u></p> <p>3. <u>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u></p> <p>4. <u>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u></p> <p>5. <u>손해보험료 지원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u></p>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식품 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6.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실태조사) ① -----

-----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3조의2에 따라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광역 단위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조정·배분

2.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식품위생교육, 자살예방교육, 기부물품관리 시스템(FMS)교육 등 실시

3.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관리 지원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 실태조사

5. 광역 및 관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

<p>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p>	<p>켓) 통계 관리</p> <p>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점검</p> <p>7.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③ 제1항에 따른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그밖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법3조의2, 시행령 4조의2에 따른다.</p> <p>⑤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제11조(보조금 지원) ① ----- ----- -----</p>
--------------------------------------------------------------	---------------------------------------------------------------------------------------------------------------------------------------------------------------------------------------------------------------------------------------------------------------------------------------------------------------------------------------------------------------------------------------------------------------------------------------

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② (생 략)

제10조 (생 략)

제11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직
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
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
을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2조·제13조 (생 략)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4. 기부식품 등을 취식 또는 사
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 신체에 발생한 상해를 보상
하기 위한 손해보험료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0조(교육·홍보) ① -----

----- 식품위
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
MS) 활용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자살예방교육 등-----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제16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제14조(평가) ① 시장은 법9조의2
에 따라 매 3년마다 시행하는
평가 주기에 맞춰 사업자의 기
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이외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서울형 평가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재정적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